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i)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ii)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iii)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iv)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시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3,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하였고, **2022.1.1.부터**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적용되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제37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 제37조 제3항).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